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. 4. 28 선고 2022가단10247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피 고 A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4. 28.

주 문

1.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20. 9. 17.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B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20. 9. 17. 접수 제39035호로 마친
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호)

판사 정성중

별지